|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65호  수출화물 노무세수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수출화물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퇴(면)세 자격인증 말소를 신청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미신고 또는 신고완료하였으나 미처리된 수출퇴(면)세 포기성명을 발표하고 규정에 따라 면세신고를 처리하였다면, 수출환급세액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분할·체제구조개편 등 원인으로 퇴(면)세 자격인증 말소를 신청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이하 ‘말소기업’)는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자격인증 말소 신청기업 퇴(면)세미정산확인서> (첨부1)를 제출하고, 합병·분할·체제구조개편기업 결의서, 정관, 관련 부문 허가서류 및 말소기업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기업(이하 ‘승계기업’)의 말소기업 소재지 계좌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며,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 말소기업은 수출 퇴(면)세액을 납부완료하기 전에 퇴(면)세자격인증 말소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말소 후, 말소기업의 환급세액은 주관세무기관이 승계기업 계좌로 환급하고, 초과환급세액의 추징이 필요한 경우, 승계기업에 추징한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퇴(면)세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수출하는 화물노무의 퇴(면)세를 포기하고, 증치세 면세정책 또는 과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퇴(면)세정책의 적용을 포기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노무 퇴(면)세포기성명>(첨부2)을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 다음날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출한 증치세 퇴(면)세를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노무는 증치세 면세정책 또는 과세정책을 적용한다.  **3.** 진료가공업무를 취급하는 생산기업이 직전년도 해관 핵소수책(장부)이 없어 당해연도 진료가공업무의 계획분배율을 확정할 수 없다면, 최근에 확정한 ‘직전년도 핵소수책(장부) 종합실제분배율’을 당해연도 계획분배율로 사용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연도 진료가공업무 핵소(核銷)를 처리한 후,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표> 중 ‘직전년도 핵소수책(장부) 종합실제분배율’과 기업의 당해연도 실제상황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당해연도에 예상된 진료가공 계획분배율 및 합리적인 서면이유를 제출한 후, 예상된 진료가공 계획분배율을 해당 연도의 계획분배율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출기업이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위탁가공 형식으로 회수하여 수출한 경우, 퇴(면)세신고 또는 <내료가공 면세증명>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한 가공비 세금계산서가 가공무역수책(장부)에 기재한 가공단위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수출기업은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이유를 설명하고, 주관해관이 발급한 서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가공 위탁가공업무에 속하여, 대응되는 가공비는 공제하거나 세금환급(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내료가공 위탁가공업무에 속할 경우, <내료가공 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상응하는 가공비는 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5.** 수출기업이 국가가 비준한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만구, 종합보세구, 주해-마카오과경(跨境)공업구(주해원구),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중국측 관련 구역), 보세물류센터(B형)(이하 ‘특수구역’)에 통관진입하고 특수구역내 단위 또는 경외 단위와 개인에 화물을 판매하며, 인민폐로 결제할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세)를 신고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자료 제출 시, 인민폐 수취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6.**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대외원조 수출화물 퇴(면)세신고 시, 상무부의 대외원조 우대대출금 사용 비준서류(‘대외원조임무서’) 복사본과 상무부의 대외원조 합자·합작프로젝트기금 사용 비준서류('대외원조임무서’)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7.** 생산기업이 외부구매하고 본 기업의 가공 또는 조립을 거치지 않고, 수출 후 직접 본 기업의 자가생산화물과 결합되어 세트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화물을 본 기업의 자가생산화물을 수입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부속 수출할 경우, 자가생산 간주화물로서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생산기업 수출이 자가생산제품으로 간주되어 화물 퇴(면)세 신고시, <생산기업 수출의 자가화물 간주업무유형대조표> (첨부3)에 따라, <생산기업 수출화물 ‘면/저/퇴’세 신고명세서>의 ‘업무유형’ 란의 관련 부분에 표시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기재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8.**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화물노무를 수출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와 소비세 면세신고를 처리할 경우, <면세수출 화물노무명세표>와 전자데이터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수출화물통관서와 적법하고 유효한 구매증빙 등 기업이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하는 자료는 수출일자에 따라 제본해야 한다.  **9.** 다음의 수출화물노무는 아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구매증빙을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법에 따라 단위가 구매한 화물을 경매하여 수출할 경우, 경매인과 체결한 거래확인서 및 관련 영수증을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한다.  (2) 합병·분할·체제구조개편 등 자산구조개편 방식으로 설립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구조개편(重組) 이전의 기업이 무상이전한 화물을 수출할 경우, 자산구조개편문서와 무상이전 증명자료를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한다.  **10.**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의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퇴(면)세신고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성급세무기관이 면세신고 종료일 이후 연장불허를 회신하고, 해당 수출화물이 기타 면세조건에 부합된다면,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회신의 다음달 면세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면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한다.  **11.** 위탁수출화물은, 위탁측이 화물의 통관수출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전까지, 위탁대리수출협의(복사본)에 의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위탁수출화물증명> (첨부4)과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위탁대리수출협의를 심사한 후 <위탁수출화물증명>에 서명날인한다.  수탁측이 <대리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규정된 증빙자료와 위탁측 주관세무기관이 서명날인한 <위탁수출화물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12.** 대외무역기업이 내수판매간주수출 과세화물에 대하여,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규정된 증빙자료와 매출세가 계상된 기장증빙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신고서> 심사 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중복감사정보 대조결과 불부합되거나, 제출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증치세공제증명이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제출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가 허위발급 또는 위조 또는 내용이 부실한 경우.  (2) 제출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기업 세무등기가 말소 또는 비정상업체로 인증된 후 발급한 경우.  (3) 대외무역기업이 수출화물 내수판매 시 신고한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 신고서>의 구매증빙에 명기한 화물과 ‘면/퇴’세 신고 시 수출화물통관서에 명기한 수출화물의 명칭이 불부합될 경우. 동일한 화물의 다양한 부품을 동일한 상품명칭으로 합병통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품공급기업이 판매한 자가생산화물은, 해당사의 생산설비와 공구로는 해당 종류의 화물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5) 물품공급기업이 판매한 외부구입화물의, 구입업무가 허위업무인 경우.  (6) 물품공급기업이 판매한 위탁가공 회수화물의, 위탁가공업무가 허위업무인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을 발급한 뒤, 대외무역기업이 제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증치세공제증명이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존에 취득한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전출처리를 대외무역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13.**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국가상검(商检)·해관·외환관리 등 수출화물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관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부문에 제출한 자료가 수출세금환급 (면세) 신고 규정의 증가자료 및 등록증빙에 속하며 상술한 부문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허위 또는 내용 부실을 발견한 경우, 대응되는 수출화물은 증치세 퇴(면)세와 면세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증치세 과세정책이 적용된다. 조사확인 결과 탈세에 속할 경우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퇴(면)세자격인증 말소 신청기업 퇴(면)세미정산확인서  2. 수출화물노무 퇴(면)세포기성명  3. 생산기업 수출의 자가화물 간주업무유형대조표  4. 위탁수출화물증명  국가세무총국  2013년11월13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65号  　　为进一步规范管理，准确执行出口货物劳务税收政策，现就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有关问题公告如下：  　　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请注销退（免）税资格认定，如向主管税务机关声明放弃未申报或已申报但尚未办理的出口退（免）税并按规定申报免税的，视同已结清出口退税税款。  　　因合并、分立、改制重组等原因申请注销退（免）税资格认定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以下简称注销企业），可向主管税务机关申报《申请注销退（免）税资格认定企业未结清退（免）税确认书》（附件1），提供合并、分立、改制重组企业决议、章程、相关部门批件及承继注销企业权利和义务的企业（以下简称承继企业）在注销企业所在地的开户银行、账号，经主管税务机关确认无误后，可在注销企业结清出口退（免）税款前办理退（免）税资格认定注销手续。注销后，注销企业的应退税款由其主管税务机关退还至承继企业账户，如发生需要追缴多退税款的向承继企业追缴。  　　二、出口企业或其他单位可以放弃全部适用退（免）税政策出口货物劳务的退（免）税，并选择适用增值税免税政策或征税政策。放弃适用退（免）税政策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出口货物劳务放弃退（免）税声明》（附件2），办理备案手续。自备案次日起36个月内，其出口的适用增值税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适用增值税免税政策或征税政策。  　　三、从事进料加工业务的生产企业，因上年度无海关已核销手（账）册不能确定本年度进料加工业务计划分配率的，应使用最近一次确定的“上年度已核销手（账）册综合实际分配率”作为本年度的计划分配率。  　　生产企业在办理年度进料加工业务核销后，如认为《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中的“上年度已核销手（账）册综合实际分配率”与企业当年度实际情况差别较大的，可在向主管税务机关提供当年度预计的进料加工计划分配率及书面合理理由后，将预计的进料加工计划分配率作为该年度的计划分配率。  　　四、出口企业将加工贸易进口料件，采取委托加工收回出口的，在申报退（免）税或申请开具《来料加工免税证明》时，如提供的加工费发票不是由加工贸易手（账）册上注明的加工单位开具的，出口企业须向主管税务机关书面说明理由，并提供主管海关出具的书面证明。否则，属于进料加工委托加工业务的，对应的加工费不得抵扣或申报退（免）税；属于来料加工委托加工业务的，不得申请开具《来料加工免税证明》，相应的加工费不得申报免税。  五、出口企业报关进入国家批准的出口加工区、保税物流园区、保税港区、综合保税区、珠澳跨境工业区（珠海园区）、中哈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中方配套区域）、保税物流中心（B型）（以下统称特殊区域）并销售给特殊区域内单位或境外单位、个人的货物，以人民币结算的，可申报出口退（免）税，按有关规定提供收汇资料时，可以提供收取人民币的凭证。  六、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报对外援助出口货物退（免）税时，不需要提供商务部批准使用援外优惠贷款的批文（“援外任务书”）复印件和商务部批准使用援外合资合作项目基金的批文（“援外任务书”）复印件。  　　七、生产企业外购的不经过本企业加工或组装，出口后能直接与本企业自产货物组合成成套产品的货物，如配套出口给进口本企业自产货物的境外单位或个人，可作为视同自产货物申报退（免）税。生产企业申报出口视同自产的货物退（免）税时，应按《生产企业出口视同自产货物业务类型对照表》（附件3），在《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的“业务类型”栏内填写对应标识，主管税务机关如发现企业填报错误的，应及时要求企业改正。  　　八、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货物劳务，在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消费税免税申报时，不再报送《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及其电子数据。出口货物报关单、合法有效的进货凭证等留存企业备查的资料，应按出口日期装订成册。  　　九、以下出口货物劳务应按照下列规定留存备查合法有效的进货凭证：  　　（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从依法拍卖单位购买货物出口的，将与拍卖人签署的成交确认书及有关收据留存备查；  　　（二）通过合并、分立、重组改制等资产重组方式设立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重组前的企业无偿划转的货物，将资产重组文件、无偿划转的证明材料留存备查。  　　十、出口企业或其他单位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12号）第二条第（十八）项规定申请延期申报退（免）税的，如省级税务机关在免税申报截止之日后批复不予延期，若该出口货物符合其他免税条件，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在批复的次月申报免税。次月未申报免税的，适用增值税征税政策。  　　十一、委托出口的货物，委托方应自货物报关出口之日起至次年3月15日前，凭委托代理出口协议（复印件）向主管税务机关报送《委托出口货物证明》（附件4）及其电子数据。主管税务机关审核委托代理出口协议后在《委托出口货物证明》签章。  　　受托方申请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时，应提供规定的凭证资料及委托方主管税务机关签章的《委托出口货物证明》。  　　十二、外贸企业出口视同内销征税的货物，申请开具《出口货物转内销证明》时,需提供规定的凭证资料及计提销项税的记账凭证复印件。  　　主管税务机关在审核外贸企业《出口货物转内销证明申报表》时，对增值税专用发票交叉稽核信息比对不符，以及发现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或者其他增值税扣税凭证存在以下情形之一的，不得出具《出口货物转内销证明》：  　　（一）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为虚开、伪造或内容不实；  　　（二）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是在供货企业税务登记被注销或被认定为非正常户之后开具；  　　（三）外贸企业出口货物转内销时申报的《出口货物转内销证明申报表》的进货凭证上载明的货物与申报免退税匹配的出口货物报关单上载明的出口货物名称不符。属同一货物的多种零部件合并报关为同一商品名称的除外；  　　（四）供货企业销售的自产货物，其生产设备、工具不能生产该种货物；  　　（五）供货企业销售的外购货物，其购进业务为虚假业务；  　　（六）供货企业销售的委托加工收回货物，其委托加工业务为虚假业务。  　　主管税务机关在开具《出口货物转内销证明》后，发现外贸企业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或者其他增值税扣税凭证存在以上情形之一的，主管税务机关应通知外贸企业将原取得的《出口货物转内销证明》涉及的进项税额做转出处理。  　　十三、出口企业按规定向国家商检、海关、外汇管理等对出口货物相关事项实施监管核查部门报送的资料中，属于申报出口退（免）税规定的凭证资料及备案单证的，如果上述部门或主管税务机关发现为虚假或其内容不实的，其对应的出口货物不适用增值税退（免）税和免税政策，适用增值税征税政策。查实属于偷骗税的按照相应的规定处理。  　　十四、本公告自2014年1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附件：  1.申请注销退（免）税资格认定企业未结清退（免）税确认书  2.出口货物劳务放弃退（免）税声明  　 3.生产企业出口视同自产货物业务类型对照表  4.委托出口货物证明  国家税务总局  2013年11月13日 |